

청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규정 전문

전부개정 2018. 3. 15. 규칙 제1461호

일부개정 2018. 10. 29. 규칙 제1476호

일부개정 2021. 12. 13. 규칙 제1592호

일부개정 2024. 6. 19. 규칙 제1652호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교육연구원은 교육 연구 지원, 교육 현장과의 연계 지원 및 교수, 현장교사, 예비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, 교육연구원 산하의 교수학습지원센터, 교원전문성개발센터, 문해력지원센터 및 학술연구사업 운영을 임무로 한다.<개정 2021.12.13.>

제2장 조 직

제3조(기구) 교육연구원에는 교수학습지원센터, 교원전문성개발센터, 문해력지원센터, 충청교육 연구소·과학교육연구소·자율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고 한다)를 둔다.

제4조(직제) ① 교육연구원에는 교육연구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과 직원 및 조교을 두며,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해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② 원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교수학습지원센터와 교원전문성개발센터, 문해력지원센터에는 전담교수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를 둘 수 있으며, 센터장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단, 센터장을 두지 않을 경우 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18.10.29.>

④ 연구소에는 각 연구소장을 둘 수 있으며, 연구소장은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 단, 연구소장을 두지 않을 경우 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.<개정 2021.12.13.>

⑤ 원장, 센터장,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제5조(기능 및 업무) 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교육 관련 연구 및 교사전문성 개발, 기타 교육발전에 필요한 연구 지원
2. 교육 현장 지원 사업
3. 실행 연구 기획 및 공모 추진<개정 2021.12.13.>
4. 교내 학술지 발행 사업 및 등재학술지 추진
5. 각종 연구대회, 학술대회, 학술세미나, 워크숍, 공모전, 포럼, 심포지엄의 개최

6. 예비교사의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임용지원, 이러닝지원, 교수학습지원<개정 2021.12.13.>
7. 교수 및 현장교사의 교수학습역량 강화 및 교수법 개선 지원, 교원 전문성 개발 지원, 초기 문해력 분야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<개정 2021.12.13.>
8. 교수학습지원센터 및 교원전문성개발센터, 문해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10.29.>
9. 연구소의 등록 및 평가, 운영에 관한 사항<개정 2021.12.13.>
10. <삭제><개정 2024.6.19.>
11. 교육지원 시설 및 설비의 운영, 관리와 관련된 사항

제6조(연구원) ① 교육연구원에는 교수연구원, 학술연구교수, 전임연구원, 겸임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교수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학술연구교수는 외부 연구기관으로부터 선정되어 학술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치된 사람으로서,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전임연구원은 박사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별도의 공모방식에 따라 선발하고, 원장이 추천하며, 총장이 임명한다.

⑤ 겸임연구원은 타 대학 및 초·중·고 교원, 교육전문직, 교육학 분야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.

⑥ 연구보조원은 학부생 혹은 학사학위소지자 중에서 연구수행의 필요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.

제7조(운영세칙) 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연구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구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② 각 연구소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8조(설치) 교육연구원은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9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은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, 교원전문성개발센터장, 문해력지원센터장, 충청교육연구소장, 과학교육연구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그 이외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24.6.19.>

제10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연구원 운영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
2. 연구 주제 선정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
3. 교육연구원 산하의 센터와 연구소 활동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
4. 교육연구원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, 개폐에 관한 사항
5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1조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발의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4장 연구소

제12조(기능) ① 중점과제 추진을 위하여 교육연구원 산하에 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13.>

② 연구소의 설치,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,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시행세칙을 통해 규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2.13.>

제5장 교수학습지원센터

제13조(기능) ①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육연구원 사업 중 교수 및 재학생의 교수학습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또는 사업을 전담한다.<개정 2018.10.29.>

②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아래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교수·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강의·교육콘텐츠 제작 및 지원
3. 이러닝 및 원격 강의 지원
4. 강의행동분석 지원
5. 기타 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

③ 교수학습지원센터는 교수 및 재학생의 교수학습역량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외부 연구사업을 수주할 수 있으며, 사업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<개정 2021.12.13.>

제14조(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) ① 교수학습지원센터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

②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교육연구원을 당연직으로 하며, 그 이외의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④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서 및 운영방안 수립
2. 발전방안 논의
3. 기타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발의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장 교원전문성개발센터

제15조(기능) ① 교원전문성개발센터는 교육연구원 사업 중 예비교사로서의 재학생 및 현장 교사의 교원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운영을 전담한다.<개정 2018.10.29.>

② 교원전문성개발센터는 아래의 직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8.10.29.>

1. 임용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2.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공모전 운영
3. 예비교사의 교육역량강화 사업 운영
4. 수업행동분석실 및 수업참관실 등 스마트 교실 운영
5. 기타 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

③ 교원전문성개발센터는 예비교사로서의 재학생 및 현장교사의 교원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외부 연구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.<개정 2018.10.29.>

제16조(교원전문성개발센터 운영위원회) ① 교원전문성개발센터에 교원전문성개발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

② 교원전문성개발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교육연구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그 이외의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④ 교원전문성개발센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계획서 및 운영방안 수립
2. 발전방안 논의
3. 기타 교원전문성개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발의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장 문해력지원센터

제17조(기능) ① 문해력지원센터는 현장 교사의 초기 문해력 교육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8.10.29.>

② 문해력지원센터는 아래의 직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8.10.29.>

1. 초기 문해력 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훈련 지원
2. 초기 문해력 교육 저널 발간 업무
3. 읽기 따라잡기 교사와 교사 리더의 전문성 개발 관리 지원<개정 2021.12.13.>
4. 초기 문해력 교육을 위한 교사 리더 양성 과정 지원

③ 문해력지원센터는 현장교사의 초기 문해력 교육 전문성 개발을 위하여 별도의 외부 연구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.<개정 2018.10.29.>

제18조(문해력지원센터 운영위원회) ① 문해력지원센터에 문해력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.
<개정 2018.10.29.>

② 문해력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<개정 2018.10.29.>

③ 위원은 문해력지원센터장, 교육대학원장, 교육연구원장, 기획처장, 아동문학과 초기 문해력 전공 주임을 당연직으로 하며, 그 이외의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21.12.13.>

④ 문해력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 3호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21.12.13.>

1. 사업계획서 및 운영방안 수립
2. 발전방안 논의
3. 읽기 따라잡기 교사 및 교사 리더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
4. 기타 문해력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발의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18.10.29.>

부 칙<제1461호, 2018. 3. 15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1476호, 2018. 10. 29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<제1592호, 2021. 12. 13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1652호, 2024. 6. 19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